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계약 업무 규정

제정 1999. 8. 9.
5차 개정 2019. 06. 25.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상지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가 발주하여 외부의 시공업체나 시공업자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 및 외부 용역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 기구에 편성되어 있는 모든 부서의 공사, 수리 및 용역계약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00.1.13)

제3조(계약담당자) 계약은 총장이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해당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제4조(계약의 방법) ① 공사 및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통하여 일반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그 목적 및 성질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경쟁, 2단계 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6.28)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 외의 방법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계약의 성립) ① 계약담당자(제3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계약상대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6조(계약서의 작성생략)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각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계약의 방법

제7조(경쟁방법) 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8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9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1.6.28)
2. 당해 입찰에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기타 본교가 정하는 필요한 요건에 해당될 것 (호 신설 2011.6.28)

제1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계약) ① 제4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기자체 사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

우에는 도급 한도액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추정가격이 5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 열기자재 사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이하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그 본사의 소재지. (개정 2000.1.13)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사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본사가 본교가 소재하는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할 수 있는 계약) ① 제4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자격 또는 기술심사를 실시한 후 공사의 경우 총액입찰, 용역의 경우 총액입찰 또는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자격 또는 기술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총액입찰 및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 자격 또는 기술과 가격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 자격 또는 기술심사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총액입찰 또는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 자격 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자격, 규격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계약) ① 제4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3000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의 경우 (개정 2000.1.13)

② 제1항2호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명통지의 대상을 제10조3항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13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 계약담당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입찰건명,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등을 표기한 지명경쟁입찰 참가서(별지 제4호 서식)를 각 입찰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1.6.28)

제1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제4조1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다.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라.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2. 천재지변, 긴급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3. 시행에 있어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추정가격이 2500만원 이하인 공사, 1000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의 경우 (다만, 시설설비 용역은 2,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0.12.11)
5. 2회 이상 공고하여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6.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그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경우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항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관련 기술직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5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지명입찰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④ 제1항6호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 체결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견적서의 제출요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1항1호 및 6호 또는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제3절 입찰 및 낙찰절차

제17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시판(교내 인터넷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별지 5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8., 2019.06.25)

- ② 제1항의 게시판 게시의 경우에는 주 2회 이상 발행되며 그 배포지역이 행정구역상의 원주시 전역이상인 생활정보지 등의 공중매체의 공고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공고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

- ② 제13조2항의 지명통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장소와 일시
3. 현장설명의 장소와 일시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교비귀속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 ②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일시 및 장소에서 본교가 주관하는 현장설명에 참석하여야 하고 현장설명에 불참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현장설명 참가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희망업체 대표의 위임장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해당기술 국가자격증 소지자의 재직증명서
- ④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참가조서(별지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참석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5일 이상
 2. 추정가격이 1억이상 10억 미만인 경우 14일 이상
 3.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경우 21일 이상

제21조(입찰참가신청서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 접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면허증 사본 1부 (설비시공면허증)
4.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1부
5. 해당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재직증명서 1부
6. 해당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입찰보증금
10. 사용인감계

제22조(입찰유의서 등의 승낙)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 조건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 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 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24조(입찰보증금의 교비귀속)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 보증금을 본교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5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입찰서(별지 8호 서식)는 입찰통보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③ 제19조2항, 3항 및 입찰통보에서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입찰유의서 등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입찰시 입찰참가 등록조서(별지 제9호 서식) 및 입찰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 결재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개찰) ① 개찰은 기타의 사유가 없는 한 입찰장소에서 입찰마감 후 즉시 실시하도록 하고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개찰일시를 늦출 경우 입찰마감 후 입찰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의 일시와 장소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개찰시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직접 관계가 없는 본교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 가격 이상으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28조(본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본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 및 용역 계약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이하로서 일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00.1.13)

1.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3.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와 용역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최다인자로, 입찰보증금도 동일한 경우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직접 관계가 없는 본교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 또는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11.6.28)

⑤ 제4항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교가 정하는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를 결정한다. (항 신설 2011.6.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교는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11.6.28)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경우 본교는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밖에 본교의 이익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항 신설 2011.6.28)

제4절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29조(계약서의 첨부서류) 계약담당자는 제5조1항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면허증 사본 1부 또는 설비시공면허증 사본 1부
3.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1부
4. 해당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재직증명서 1부
5. 해당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제30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개정 2002.4.11)

제30조(계약보증금) ①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다만, 공사계약은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 ②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삭제 (2002.4.11)

제31조(계약보증금의 교비귀속)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교비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2조(연대보증인)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2배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대보증인은 제19조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이어야 한다.

제33조(계약이행의 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담당자 또는 전문기술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의 일부가 완성되어 본교가 그 인도를 요구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검수담당자 또는 전문기술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조서(별지 제11호 서식)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대가의 지급) ① 교비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행정지원처 회계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06.25)

② 대가의 지급시 제38조 및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상쇄하고 지급할 수 있

으며 이때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당초의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발행한다.

제35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1)을 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자보수의 이행)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를 통고하여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고한 기간내에 계약 상대방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교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하고 그 잔액은 본교에 귀속시킨다.

제3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대상자는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중 철거공사 및 철강재설치공사중 시설물 제거공사, 비계공사 중 구조물해체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 및 자갈채취 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공사
- ③ 제22조 제2항, 제23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교비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적용한다.
 1. 도로(포장공사포함), 상하수도 관로, 일반건축등 공사 : 100분의 6
 2. 발전설비, 상수도구조물등 주요구조물 및 조경공사 : 100분의 7
 3. 부지정지등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기타공사 : 100분의 5

제3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화재 기타 본교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의 1000분의 1
2. 용역계약의 1000분의 2.5

제3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단가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상의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교비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교비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및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1년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본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의 2 (장기계속계약) 다년간 계속하여 시설관리를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1.6.28)

제41조의 3 (단가계약) 일정기간 계속하여 수리, 용역(설계, 감리, 측량, 조사 검정 등)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1.6.28)

제5절 하도급 관리

제42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동의를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이를 통지(별지 제12호 서식)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 일반건설업자는 공사금액이 아래 규모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중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아래의 비율 이상을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총장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비 10억원 이상 : 20/100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2. 공사비 15억원 이상 : 30/100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제44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총장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총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5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8)

제4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총장으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정 시행 후 체결하는 계약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술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09, 2011.6.28)

이 규정은 201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지명경쟁입찰참가통지서

입찰 참가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내 용	입찰건명			
	현장설명			
	입찰			
	입찰등록마감일시			
	서류제출처			

상지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오니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상 지 대 학 교 총 장

_____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9.06.25)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입찰공고 번호	공 사 명	입찰방법	설계금액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입찰일시
상지 - 호						

2. 입찰참가자격

3. 현장설명참가자격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는 상지대학교에 귀속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경쟁참가자격이 없는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기타계약 조건은 상지대학교 총무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결과 담합한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대학교 **총무팀**(730-01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상 지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8호 서식)

입찰서

입찰내용	공고 번호	제 호	입찰 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년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상지대학교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계약업무규정에 의한 공사(기술용역)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대학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용역수행) 기간 내에 공사(용역)를 완성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상 지 대 학 교 총 장 귀 하

(별표1)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도로	(2년)
- 암거·축구 및 포장을 포함한다	
나. 상·하수도	(3년)
- 관로매설 도는 기기설치	
다. 부지정지	(2년)
라.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2년)
마. 기타 토목공사	(1년)
바.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교정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 집회시설 또는 대규모 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 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10년)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1)회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5년)
3) 건축물중 "1)" 및 "2)"와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사. 전문공사	
1) 실내공사	(1년)
2) 토공	(2년)
3) 미장 또는 타일	(1년)
4) 방수	(3년)
5) 도장	(1년)
6)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7) 창호제작 또는 설치	(1년)
8) 지붕 또는 판금	(3년)
9) 철물(철골을 제외한다)	(2년)
10) 철근콘크리트(바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3년)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로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 가스 또는 배열설비	(2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3년)
13) "11)" 및 "12)"외의 건물내설비	(2년)
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1) 송배전관로공사(지중)	
가) 송전관로공사	(3년)
나) 배전관로공사	(2년)
2) 변전소설비(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	(3년)
3) 배전설비공사	(2년)
4) 기타 전기공사	(1년)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등	(1년)